

—구미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5년 5월 18일

나. 제안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4년 5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05년 5월 25일

제10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이 재 웅

나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공포·시행 (2004.12.18)으로 재난기구 신설 및 여유기구 설치 등 법령개정에 따른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 지방행정수행 역량강화에 따른 기구를 조정하고
- 보정정원 범위내에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구일부의 통·폐합 및 명칭변경을 일부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신 설 : 재난안전과(1과 4담당)
- 조 정
 - 읍면동기능전환팀(한시기구) → 혁신정책담당관(1과 4담당-여유기구)
- 명칭변경

- 기획담당관 → 기획예산담당관
- 경제진흥과 → 과학경제과
-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 → 박대통령기념사업단

라. 참고사항

- 행자부 자제12200-247(03.5.9)호의 표준정원시행지침
- 경북도 자치행정과-1884(04.3.6)호의 200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협의
- 경북도 자치행정과-5358(04.7.2)호의 읍면동기능전환관련 한시기구처리지침
- 경북도 자치행정과-10011(04.12.20)호의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조 택 환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재난관리기구 및 여유기구 신설 등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